

정 관

제 정	1985. 4. 14
개 정	2019. 3. 20

삼성SDS



定 款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23-정 관-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SDS CO., LTD. (약호 SDS)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2) 전기통신업(유무선 전신전화통신업, 무선통신서비스판매업, 통신위성, 통신 중계 및 방송 전송, 부가통신업 및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을 포함)
- (3)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감리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 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포함)
- (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 (5) 소프트웨어 및 퀸텟스 기타 저작물의 개발, 판매, 임대업
-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7)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방송·영상·음향장비, 전기장비, 의료기기, 자동 제어기기, 웅용 설비, 공작기계, 기타기계, 장비 및 설비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 및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설치 공사 및 수리업, 기타 관련 서비스업
- (8)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원격교육, 학원 운영, 평생 교육 시설운영, 통신교육 및 컴퓨터학원 등 기타교육기관업을 포함한 제반사업
- (9) 정보산업 및 교육운영에 관한 서적출판업
- (10) 고도정보통신 서비스업(유선 및 위성방송업 포함)
- (11) 전자상거래, 인터넷 EDI등 인터넷 관련사업
- (12) 멸정통신사업 및 기타전기통신업(기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 포함)
- (13) 경영, 정보기술, 솔루션 컨설팅 서비스업
- (14) 노하우기술의 판매, 임대업
- (15) 광고대행업
- (16) 신, 재생 에너지 사업 및 대행업
- (17) 건축업

- (18) 토목시설물 건설업
- (19) 소방시설 공사업
- (20) 산업환경설비, 기계설비, 창고설비 등 설비 설치 공사업
- (21) 건축물 또는 공간조형물 설계 및 디자인
- (2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23)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24) LED 조명사업
- (25) 기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
- (26) 운수업, 창고 및 관련서비스업
- (27) 보세장치장 사업 및 보세운송업
-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9)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
- (30) 주차장 운영업
- (31) 음반 및 기타 기록매체 출판업, 문화예술 이벤트 및 전시, 예술, 대여, 서비스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3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33)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 (34) 측량업
- (35) 전 각항에 관련된 제반사업(수출입업 및 통대행업, 기술용역,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기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등을 포함한 금융업 및
금융관련서비스업등 제반사업) 및 부자

제 3 조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amsungsds.com>)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중앙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사십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50,000,000 (오천만)주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 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 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 배당한다.
5.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염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발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9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1 조 (주식의 인수)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가.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다.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다.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물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나. 호 및 다.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5.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7. 본 회사는 제1항 가.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제임 또는 제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본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본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준용한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생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설, 결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경기 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를 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등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6/17 -

23-정관-07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67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말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17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말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금67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17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말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플 시에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회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24 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말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捺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배치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27 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본 회사는 이사 또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약간명 선임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경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본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3.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 한다. 대표이사 유휴 시에는 위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직위에 2인 이상 있는 경우 먼저 선임된 자를 우선하고, 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직무대행자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책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본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본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

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 결의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여 이를 적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또한 추가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나. 감사위원회
 - 다. 경영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직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히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정과 효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8 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 및 그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기재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를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기재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1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의 1회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 45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46 조 (중간배당)

1. 본 회사는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나.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다.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라.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마.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바.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매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2019.03.20)

이 정관은 제34기 경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 제9조3, 제16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및 적용례)

1. 이 정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있은 본 정관 제11조 제1항 나, 호에 해당하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의 발행 및 같은 항 다,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주의 발행은 제11조 제1항 나, 호, 다, 호에서 규정하는 발행 한도의 한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기타 사업)

본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육영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달리 기재와 같다.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서기 1985년 4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발 기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6-100
전 상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기동982-86
강진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733-61
정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648-5
이필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10-36
이행도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상옥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로 259
삼성반도체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진구

1985.	4.	14	제정	2000.	1.	14	개정
1987.	2.	25	개정	2000.	3.	16	개정
1987.	5.	25	개정	2000.	5.	30	개정
1987.	11.	14	개정	2001.	3.	9	개정
1990.	2.	26	개정	2002.	2.	28	개정
1991.	2.	28	개정	2005.	2.	28	개정
1992.	2.	28	개정	2008.	3.	28	개정
1993.	6.	7	개정	2009.	3.	13	개정
1994.	1.	25	개정	2009.	11.	26	개정
1995.	2.	28	개정	2010.	3.	19	개정
1996.	2.	28	개정	2011.	3.	18	개정
1996.	9.	30	개정	2014.	3.	14	개정
1997.	3.	18	개정	2014.	7.	29	개정
1998.	3.	27	개정	2016.	3.	11	개정
1998.	7.	6	개정	2018.	3.	23	개정
1999.	3.	23	개정	2019.	3.	20	개정

- 17/17 -

23-정관-18